

변경대비표(ETF)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투자신탁 명칭	결산	변동성	기업공시 서식	스왑거래 비용	기타 법개정 사항
1	미래에셋 TIGER 글로벌 AI 인프라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	-	○
2	미래에셋 TIGER 글로벌사이버보안 INDXX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	-	○
3	미래에셋 TIGER 차이나 CSI300 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합성)	-	○	○	○	○	○
4	미래에셋 TIGERS&P500 인버스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H)	-	○	○	○	-	○
5	미래에셋 TIGER 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	○	-	-

2. 변경 사항:

-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 2)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 3)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
- 4)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5) 합성 ETF 스왑거래 비용 업데이트
- 6)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예정일: 2025년 02월 14일 (금)

4. 변경 내용:

-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 TIGER 글로벌사이버보안 INDXX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 TIGER 글로벌 AI 사이버보안 INDXX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 TIGER 글로벌 AI 인프라액티브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 TIGER 글로벌 AI 전력 인프라액티브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	<u>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 기구 보수포함) 업데이트</u>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u>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및 증 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u>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u>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u>
제 5 부. 4.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 역	-	<u>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업데이트</u>

3)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

no.	펀드명	변경 전 등급 표준편차	변경 후 등급 97.5% VaR	변경 전(%) 표준편차	변경 후(%) 97.5% VaR
1	미래에셋TIGER차이나CSI300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채권혼합-파생형)(합성)	<u>2</u>	<u>1주</u>	<u>17.53</u>	<u>42.92</u>
2	미래에셋TIGERS&P500인버스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주식-파생형)(H)	<u>2</u>	<u>1주</u>	<u>16.52</u>	<u>37.14</u>
3	미래에셋TIGER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u>2</u>	<u>1주</u>	<u>16.42</u>	<u>36.56</u>

주) 변동성 기준 2등급이나, 상품구조의 복잡성 및 특수성을 기준으로 1등급으로 분류

4)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 2 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신설>	(5)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별첨 1]

*2024.3.1 시행일 이후 결산기가 도래하는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부터 적용

[별첨1]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시 비용 미발생
X	X	O

5) 합성 ETF 스왑거래 비용 및 기준일 업데이트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 부 10. 나. 특수위험	[수익조건 변경 위험] -	[수익조건 변경 위험] <u>업데이트</u>

6)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사항 반영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 2 부. 14. 나. 과세	(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중략> 다만, <u>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u> <u>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u> <u>*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 으로함.</u>	(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중략> <u>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펀드 단계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사 등)가 투자자에게 펀드 소득 지급 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u>

미래에셋자산운용(주)